

#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

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 명 칭 ) 본회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.
- 제 2 조 ( 위치 )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근무하는 도서관내에 둔다.
- 제 3 조 ( 목적 ) 본회는 국립대학도서관의 운영개선과 사서업무의 향상을 도모하여 대학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4 조 ( 회원의 자격 ) 본회의 회원은 4 년제 국립대학도서관장 및 사서직인 실무책임자로 한다.

## 제 2 장 조 직

- 제 5 조 ( 임원 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(1) 회장 1 인
  - (2) 부회장 1 인
  - (3) 이사 약간인
  - (4) 감사 2 인
- 제 6 조 ( 임원선출 )
- (1)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- (2)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- 제 7 조 ( 임원의 임무 )
- (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된다.
  - 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  - (3) 이사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.
  - (4)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.
  - (5)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.
- 제 8 조 ( 임원의 임기 )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- 다만, 임원의 보직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잔임기간 보임토록 한다.

### 제 3 장 임 원 회

#### 제 9 조 ( 임원회의 구성 )

- (1)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.
- (2)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(3)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
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- (4)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질설할 수 있다.

제 10 조 (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)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제 11 조 ( 임원회의 의결사항 )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(1) 총회에서 수입된 사항
- (2) 회장이 제안한 사항
- (3) 기타 필요한 사항

### 제 4 장 사 업

제 12 조 ( 사업 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(1)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공동연구
- (2)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간행물 출판
- (3) 실무연수 및 도서관학 세미나
- (4) 도서 및 자료교환
- (5) 각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및 정보교환
- (6) 도서관업무의 전산화
- (7) 기타 필요한 사항

### 제 5 장 회 의

제 13 조 ( 총회 )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- (1)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개최한다.
- (2) 임시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 정기총회 의결사항 )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회칙의 개정
2. 임원 개선
3. 감사결과보고 및 결산승인
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5. 임원에의 위임사항
6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 6 장 재 정

제 16 조 ( 경비 )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보조금, 찬조금 및 기타로써 충당한다.

제 17 조 ( 회비 ) 회원의 회비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8 조 ( 회계년도 ) 본회의 회계년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말일로 한다.

부 칙

본 회칙은 197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회칙은 198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회칙은 198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